경기문화재단 기록관리에 관한 규칙(안)

제 정 0000. 00.00.(규칙 제000호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경기문화재단(이하 "재단"이라고 한다)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기록물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재단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기록물"이란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 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 을 말한다.
- 2. "기록물관리"란 기록물의 생산·분류·정리·이관·수집·평가·폐기·보 존·공개·활 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.
- 3. "기록관"이란 기록물을 보존□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열람공간, 사무공간, 작업공간, 보존서고 공간, 보존시설 및 장비, 기록관리시스템,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.
- 4. "기록물관리부서"란 본부 각 처·실 및 사무소·연구원·사무국(이하 "사무소 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5. "처리부서" 란 본부 각 실·부, 사무소 등의 각 부·과·팀·센터를 말한다.
- 6. "기록관리시스템"이란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7. "기록물철"이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업무의 범위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.
- 8. "단위업무"란 직제 개정 등으로 업무가 변경되어도 2개 이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세분화된 업무기능 또는 사업단위를 말한다.
- 9. "기록물분류기준표"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관리 기준을 제시한 표를 말한다.

제2장 구성 및 업무분장

제4조(기록관의 설치 및 구성)

- ① 기록관은 경영본부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한다.
-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 원과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③ 기록물관리부서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부 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실무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.

제5조(주요업무 및 업무분장)

-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, 그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을 정한다.
 - 1. 재단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
 - 2. 재단 기록물 수집 · 관리 및 활용
 - 3. 재단 기록물관리 교육 계획 수립 · 시행
 - 4.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· 운영
 - 5.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 및 관리
 - 6.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
 - 7.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도 기록원으로의 통보
 - 8.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
 - 9. 기록관 시설 및 장비 관리
 - 10.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
 - 11.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
 - 12. 보유기록물의 열람 및 전시
 - 13.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
 - ②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생산 · 접수된 기록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
 - 2. 기록물 생산현황 작성
 - 3. 기록물분류기준표 중 소관업무에 대한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사항
 - 4.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
 - 5. 기록물의 정리·이관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장 기록물의 관리

제6조(생산 및 등록)

- ① 처리과의 장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·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처리과의 장은 조사·연구·검토서,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·관리 기준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재단에서 생산·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분류)

-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·운영하여야 하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, 기록물의 비치여부·공개여부·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 처리부서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·단위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존기간)

-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·준영구·30년·10년·5년·3년·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 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.
- ② 처리부서는 제1항의 보존기간 책정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상의보존기간을 기준으로 기록물철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여야 한다.
- ③ 보존기간 기산일은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.

제9조(정리) 처리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을 정리하여야 하며, 기록물의 정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.

- 1.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여부
- 2. 실제 기록물과 등록정보의 일치여부
- 3. 기록물의 물리적 정리와 보존상자 편성

제10조(생산현황 통보)

- ①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을 기록물철별로 분류·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기록관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기록관장은 재단의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 일까지 도 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
제11조(이관)

- ① 처리부서는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 다만 감사·소송·민원·행정참조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 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이관 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, 업무참고□활용의 목적이 달 성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기록물 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보존)

-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비전자기록물의 형태·생산부서·연도·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.
- ② 기록관장은 서고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2년마다 기록물의 정수점 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 보존을 위한 환경의 구축·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3조(행정박물의 관리)

- ① 기록관장이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.
- 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, 접수, 또는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록관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행정박물의 목록 및 관련 정보를 기록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.
- ③ 기록관장은 제출된 행정박물 목록 중 보존가치가 높은 행정박물에 대해서는 이관대상으로 지정□관리해야 한다.
- ④ 행정박물의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3과 같다.
- ⑤ 행정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다.
 - 1. 행정적 · 역사적 · 문화적 · 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.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

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

제14조(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)

- ① 기록관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부서 의견조회,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·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매 1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.
- ③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에 대해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(동종·대량 기록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기록물은 50년) 경과 시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ㆍ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)

- ① 제1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관에 기록물평가심의회(이하 '심의회'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고, 그 외에 내부위원 3명과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위원 1명을 위촉한다. [민간위원이 심의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]
-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록 물관리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, 서기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담당한다.

제16조(심의위원의 자격조건)

- ① 심의회의 내부위원은 재단 소속 직원 중 2급 이상으로 기록관장이 위촉한 다.
-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록관장이 위촉한 다.
 - 1. 기록관리학 \cdot 행정학 \cdot 법학 등 기록물관리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
 - 2.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
 - 3. 기록관에서 5년 이상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

제17조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
- 1.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· 폐기 · 보류에 관한 사항
- 2.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처리과의 의견과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
- 3. 단위업무 및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18조(심의회의 운영)

-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, 심의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서명·날인한다.
- ④ 전문요원은 회의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 종료 후에는 기록물평가심의서·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·회의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9조(위원의 의무)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심의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안관리 및 점검

제20조(보안관리)

-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②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 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1조(긴급사태 대비) 기록관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 재난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6장 기록물 대출 및 열람

제22조(열람시간)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복무규칙에 따른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. 다만,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·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3조(열람과 대출의 자격)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는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1. 경기문화재단 임직원
- 2.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기 위해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 외의 자

제24조(열람 준수사항) 열람은 기록관 내 열람공간에서 하여야 하며 업무 담당 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25조(대출)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.

- 1.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7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2.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3. 기록관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 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7장 보 칙

제26조(기록물관리실태 점검) 기록관장은 각 처·실 및 사무소 등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제27조(세부사항)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